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09

발의연월일: 2025. 1. 15.

발 의 자:서영석·박해철·이해식

임광현 • 박홍배 • 윤준병

박민규 • 문진석 • 노종면

김 윤 • 윤종군 • 윤건영

정준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은 성인에 비하여 경제적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고, 보호자에 의한 학대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이나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활동을 통해 축적한 자산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아동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산 형성뿐 아니라 자산의 지출 관리가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바, 보호대상아동 등 에 대해서 정부가 이들의 자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에 대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제44조의3으로 하고, 제4장제2절에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2(자산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등 아동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이하 "자산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사업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1.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와 관련한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지원
 - 2. 자산관리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3. 그 밖에 자산관리사업 지원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대상 아동 및 자산의 범위, 자산관리사업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생 제44조의3(다함께돌봄센터)(현행략)제44조의2와 같음)